

KNSI 참고자료 3

한국의 북한인권결의 찬성과 향후 정책 과제

: 정책 추진원칙 및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I.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
- II.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 III. 향후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
- IV. 결론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찬성 91표, 반대 21표,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12월 중순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국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과거와 달리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북한인권운동에 어떤 과제를 던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I.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

1) 유엔의 두 가지 접근

유엔에서 북한인권 논의는 유엔 현장기구와 조약기구 양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현장 기구에서는 1997-98년 제49-50차 인권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3-5년 제59-61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¹⁾ 제60차 유엔 인권위 결의에서는 이전 결의에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삭제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이 요청되었다는 것이 눈에

떡었다. 제61차 인권위에서는 특별보고관의 임무 1년 연장과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을 제기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²⁾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점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도 인권위의 결의와 대등소이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 등 현장기구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안 상정 여부 및 결의안 채택 여부는 주로 회원국의 국력과 국가이익에 의해 영향 받는 일종의 권력정치 양상을 띤다.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전제할 경우에도 결의문 내용은 자유권 중심으로 다뤄지는 반면 생존권, 개발권, 평화권 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국제인권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현장기구의 북한인권 결의문 내용에 기술협력, 인권대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의문 전체의 기초와 결의문 채택과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압력 위주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엔 조약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국들의 문제 해결을 기능적으로 모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장기구와 달리 정치성이 약하고 실용적 접근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규약위원회³⁾가 북한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밝히고 있는 최종견해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진다. 지면관계상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북한의 제2차 사회권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8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⁴⁾ 사회권위원회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정부와 인민들의 노력과 무상의료, 무상보통교육의 이행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먼저 평가하고 있다. 이어 사회권위원회는 17개 우려사항과 24개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다. 먼저 우려사항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헌법 제162조, ②국제인권협약 적용의 판례가 없고 협약이 국내법원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③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력 배치 제도, ④국내법 내에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우려에 비추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제안과 권고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국제원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활동에 참여할 것, ②개인청원 절차의 기능과 그 적용 판례를 제공할 것, ③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 ④반차별 실현을 위한 국내법 재검토 및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등.

이 밖에도 유엔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현장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와 관련이 있어 북한의 협력 거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금번 제6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도 “미국과 EU 등 적대세력들이 이번에 또다시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고 밝혔다.⁵⁾

이상 살펴본 것처럼 유엔 인권기구는 현장기구와 조약기구를 양측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구에서 상이한 북한인권 논의는 두 기구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인권위원회와 같은 현장기구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북한에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는 데 비하여, 국제 인권규약위원회와 같은 조약기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해당 위원회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하는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라 북한은 총회, 인권위 등 현장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공세” 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한편, 가입한 4개 국제 인권규약위원회 등 조약기구에는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해당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존중과 같이 선별적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⁶⁾ 현장기구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정책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세계의 인권 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대외정책 목표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과 같은 당면 대북정책 목표가 결합해 구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작성·발표하는 것이 전자의 사례에 속한다면,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 행정부의 북한인권 상황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자유권이 주요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⁷⁾ 이 점은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여 국무부에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인권상황 보고서’ 상의 북한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문의 논조와 유사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확인 사항을 언급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다.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협력관계가 두드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⁹⁾ 북한인권법을 통해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자유권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생존권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한 군축 등에 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탈북자 지원에 대한 집중적 재정 배분 등을 놓고 볼 때 북한인권법이 북한정권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실제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 국무부 후원으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도 북한인권 상황을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될 뿐 상황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¹⁰⁾

2006년 들어 미국은 기존의 소극적 탈북자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탈북자 체류국의 반대, 탈북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탈북자 수용은 “절박한 사유(a compelling reason)”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왔다.¹¹⁾ 그런데 2006년 들어 레이코프위츠(J.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대북 인도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탈북자 수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 이런 가운데 미 지방법원에서 한국국적의 탈북자(새터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미 행정부가 탈북자 체류국에 직접 가서 심사를 한 후 난민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 접근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폭로와 북한당국에 대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식 방법을 주로 구사하고 있으며 그 지렛대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연계를 활용하고 있다.¹³⁾ 그러나 그런 접근이 북한정부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어떤 효과를 미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은 유럽연합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점은 안보중심의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조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대외정책에서 인권이 갖는 비중과 그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그리고 정책 수단 등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3세계의 발전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인권존중을 평화, 안보, 법치 등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역시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왔다.¹⁴⁾

2000년 1월 북한과 이탈리아의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북한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 사이에 일련의 관계개선이 전개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전략’, ‘국가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인권존중을 남북대화, 비확산, 지역안정 등과 함께 주요 관심사에 포함시켰다.¹⁵⁾ 유럽연합의 이같은 대북(인권)정책은 사회권을 인권 영역에 적극 포함하고 있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원과 대화를 주정책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인권을 다른 정책영역과 연계하거나 그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엔 총회 및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제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북한과의 인권대화 중단은 위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은 1998년 12월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정치대화에서 북한인권도 다루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위를 활용한 다자적 접근을 적극 구사하기 시작하였다.¹⁶⁾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위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요구가 북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결의안 상정 및 채택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를 중단하였다.

유엔 인권위의 대북결의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주로 미국을 향한 것이었다. 북한인권 결의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다같이 지지하였지만 그 의미는 양측의 대북인권정책의 성격 차이로 볼 때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이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인권에 관한 양측의 정책적 비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인권문제보다는 핵문제 등 안보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대외정책 전반에서 인권의 비중을 높이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인권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대화 재개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3) 비정부기구의 활동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북한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런던 본부에 동북아담당 활동가를 두고 북한인권 상황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국제인권 보고서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 외에 뚜렷한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¹⁷⁾ 국제사면위의 2005년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유권 침해를 거론하면서도 계속되는 식량난이 아동의 영양실조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식량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¹⁸⁾ 북한의 식량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생존권과 자유권의 상대적 중요성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사면위원회는 식량난과 인권 상황의 상호 영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생존권과 시민적 자유에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¹⁹⁾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도 매년 세계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는데, 2005년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교육권, 근로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 있어서의 접근 제한과 차별 원인을 북한정부의 계급정책으로 환원하고 있다.²⁰⁾ 그렇다고 인권감시협회는 경제제재와 같은 방법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최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이상과 같이 볼 때, 국제사면위원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원인을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블럭 와해, 자연재해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인권감시협회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인권 침해 원인으로 주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꼽고 있다. 이와 달리 두 단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2005-6년 들어 비교적 활발한 북한인권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²²⁾ 국제인권운동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두 단체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과잉정치화 된 북한인권 논의를 관망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유엔에서 계속되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의 상황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인권감시협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 정치적 접근방법까지 취하고 있다. 2006년 9월 16일 협회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향후 한반도 관련 논의시 북한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²³⁾

한편, 미국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주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05년 워싱턴, 서울 대회에 이어 2006년 들어서도 브뤼셀, 로마에서 대회를 갖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북한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오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는 납치자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관련 단체와 연대활동도 벌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사와 접근하는 방식은 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인권운동과 다른 차원에서 국내외 인도주의단체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북협력국제NGO회의’를 네 차례 가져왔는데, 2005년 제4회 회의에서는 단순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평화와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⁴⁾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평가해보면 ①반복되는 비판 및 폭로 위주의 접근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고, ②자유권 보호는 북한의 안보논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③북한의 당면한 생존권, 평화권, 발전권 향상을 위한 움직임은 걸음마 단계에 있고, ④행위자별 다양한 접근이 조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편성 및 자유권 중심의 주류 북한인권 평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괴로 현상 등으로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II.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북한인권 관련 한국이 처한 위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주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국제사회의 일원인 북한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압박 중심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극심하고 지속적인 식량 및 의약품 부족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권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인권분야 인력 개발을 위해 북한 관리와 교원들을 초청해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통한 대북인권정책에 손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을 인권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협력의 유지 등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말하자면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시각과 대 ‘북한’ 정책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시각 사이에 있는바, 최적의 합리적 입장은 두 시각의 접촉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시각에서 서서 북한인권을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한국의 합리적 정책 수립에도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의 이같은 이중적 위치는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한 과거 서독의 정책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고 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독은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독을 향해 공개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대신 국제회의나 제3국을 통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문제제기하거나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밀거래(Feikauf)를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정책을 전개하여 점진적으로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였다. 서독 내에서는 동독정부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서독정부는 1972년 동독과 기본 조약을 맺은 이후 “접촉을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김대중정부부터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서독의 경험과 유사한 점이 많다.²⁵⁾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그 이중적 위치를 무시당한 채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한국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이어 제60-61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국사회에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직전 밝힌 설명문(Explanation of Vote)에서 한국측 대표는 ①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다, ②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③북한은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한국측 대표는 기권 입장을 밝히면서 ①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②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 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 지속, 인도적 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하는 한편, ③북한측에는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할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두 입장 사이에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진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을 대북정책 전체 틀에서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 등 다른 주요 우선순위의 조화 속에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가. 정책결정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상황 인식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당면한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 및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 화해협력관계의 정착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정한 이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⁶⁾

이상 살펴본 정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은 특수성론과 점진적·실질적 개선론 등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판단만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담론에 입각한 정교한 설득논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먼저, 특수성론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한인권을 생존권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공개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의 당면한 생존권 향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유권 신장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명분으로 북한정권 압박이나 심지어 교체를 주장하는 입장은 협소한 인권론에 입각한 ‘인권 권력 정치’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생존권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권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배치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관계를 평화 우선으로 보는 것도 인권 범주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인권 영역간(혹은 인권과 다른 가치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완화와 같은 한반도의 특수 상황은 북한인권 개선을 유보하는 근거가 아니라 북한인권의 범주를 재구성하고 개선 방법을 수립하는데 적극 고려할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편성의 관점 아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인권이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제기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 있게 논의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식량은 물론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 상태에 있고 안보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권과 평화권 등 소위 3세대 인권도 북한의 인권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이를 인권담론

에 제외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한다는 논리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실질적 인권개선에도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점진적·실질적 개선론은 북한인권정책이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른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전개할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점진적 개선론은 북한인권 개선이 다른 사안의 영향으로 지연되거나 유보될 수 없다는 비판, 실질적 개선론은 북한주민의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는 눈감는 논리라는 비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의 보편성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그에 대한 비판 모두 적절한 입장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북한인권 개선의 책임은 한국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복잡하고 구조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행위자가 그 해결을 도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각 행위자들은 저마다의 여건과 능력 속에서 그에 알맞는 역할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여 북한인권개선 노력에 함께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 한국과 외국, 그리고 국제기구는 모니터링, 인도적 지원 같은 공통 사업 외에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사안과 탈북자를 주로 다루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탈북자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처럼 ‘북한’ 인권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안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당면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경성이슈(hard issue)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로서 그 자체로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안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에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그 내용적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외화 할 수 있는 적합한 형식이 요청된다. 국제인권론에 기초한 북한인권 정책방향의 재구성이 그것이다. 이는 단지 정부 정책의 정당화 작업에 그치지 않고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이행 궤도에 오를 경우 본격화 될 북한인권 관련 국제적 개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의미도 갖는다 하겠다.

나. 정책집행

한국정부의 현 북한인권정책 집행상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정책내용 범주에 북한내 인권, 재외탈북자,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내 인권에 관해서는 당면한 생존권과 인도적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자유권 분야에 대해서는 추상적, 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분단상황에서 갖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둘째, 정부는 정책수단으로 지원, 대화 등 당근에 주로 의존하는 대신 비난, 이슈연계(issue

linkage) 등 채찍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정부와의 직접적인 인권대화보다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협의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서독의 동독인권정책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서 남북 접촉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책변동과 관련해서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고 사안의 특성상 정권 교체시에도 수정·보완은 가능해도 정책집행의 종결은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현 정부는 북한인권정책을 부드럽고 조용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는데 이는 실질적,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접근방향과 상응하는 정책집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성격의 정책집행이 거칠고 시끄러운 반작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판단할 내용적 기준으로 효과성과 능률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북한을 비롯한 다른 행위자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 북한인권 상황으로 한국의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효과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정책은 북한인권을 둘러싼 여론 분열, 각계약진식 사업으로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한적인 것은 첫째, 정부를 포함한 각 행위자들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북한의 반응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이 통합성을 갖고 조화롭게 채택되지 못한 주체적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대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전략 수립과 정책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의의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인으로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심각한 입장 대립이 초래하는 높은 기회비용을 꼽을 수 있다. 이 현상은 비단 북한인권정책만이 아니라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앞의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정책 목표가 행위자간에 다양함에 따라 실제 정책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충돌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째, 셋째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북한 및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과 지향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표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기능적, 실용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 **보론:** 금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관하여

11월 16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결정이 “금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찬성 투표를 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밝히면서 전자는 일반적인 종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고, 후자는 북핵실험의 파장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에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의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찬성 투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부 발표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초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고 말하였다.

III. 향후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

1) 추진 원칙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특히 4개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개선은 보편성 등 국제인권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의 속성을 북한인권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은 절대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특정 인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임과 동시에 그 달성 과정과 수단 선택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준거이므로,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국제연합 현장의 기본정신과 한반도의 전쟁 경험 및 군사적 긴장상태의 지속은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소들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도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 평화를 무시한 북한인권 개선 역시 무의미하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나가야 할 동시 과제이다.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북무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이고,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은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을 높이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당면한 생존권 회복 및 경제개발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 권력 기반의 비민주적인 성격이 인권 보장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²⁷⁾는 지적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인권친화적인 정치제도 및 법치 확립 등 정치적 과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실질적 개선에 기여해야 하고, 실질적 개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북한 스스로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과정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적절하다. 북한에 대한 우월감이나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과잉개입은 인권개선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비인권적(심지어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은 최근 국제분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은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지원 수단이지 국제사회가 북한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다.

2)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권개선 방안은 각 행위자의 입지와 능력, 선호에 따르겠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이루어내는 것이 추진원칙과 상응한다.

가. 남한

북한인권정책에 있어 남한은 특수한 입장에 있고 이는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남한은 일정 시점까지는 인도적 지원, 각종 남북대화 및 인적 접촉, 탈북자 수용 등의 방법으로 생존권, 탈북자,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북한의 자유권 감시 및 비판활동을 지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혁개방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권문제를 공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현재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나쁜 경찰(bad co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역할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병행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관

계개선을 추구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자유권분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은 탈북자, 일본은 남북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 청산과 대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막중하다.

다. 중국

중국은 북한과 같이 상대주의적 인권관을 갖고 있고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중국은 탈북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로서 탈북자 보호 및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경제 이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체류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국은 또 에너지,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앞장서왔는데 앞으로도 이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라.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해왔다. 또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유럽연합은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착한 경찰(good cop)’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 유엔 인권기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접촉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인권판무관실과 접촉을 거부하는 명분은, 북한이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유엔 인권위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가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기술협력력이 이루어지려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양자의 접촉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또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판무관실은 탈북자와의 면담과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해왔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은 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임명 역시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방북을 위해 그의 보고서 작성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북한과의 비공개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도 북한인권 개선에 고유의²⁸⁾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

바. 비정부기구

국제 인권단체와 인도적 지원단체 등 비정부기구도 북한 인권 모니터링과 생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인권단체는 북한의 인권을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모두 인권인프라 확충을 통해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정부는 금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앞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시 남북한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실질적 인권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 북을 향해서는 중단되어 있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 국내의 반인권적 법제를 개폐하여 북한 인권 개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여 바람직한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북한 인권을 둘러싼 보편성·특수성 논쟁은 ‘한반도 인권’ 향상의 길로 수렴될 것이다.(2006/11/27)



* 이 글은 평화네트워크 정책포럼 발표문(2006/11/27)입니다.

- 1) 2006년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고 10월 현재 이사회 조직 개편논의로 북한인권 등 국가별 인권상황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 2)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RES/2005/11, 14/04/200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 3) 북한은 2006년 9월 현재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 4)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12/1/Add.95, 12/12/2003.
- 5)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06. 11. 20.
- 6) 김수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2005), 108-112쪽 참조.
- 7)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5*,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State Department, March 8, 2006 참조.
- 8) 힐(C. Hill), 버시바우(A. Vershbow) 등 전현직 주한미대사도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미국이 수집한 북한인권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9) 서보혁, "행위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2005), 311-317쪽.
- 10) *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2005); 김수암,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통일정책분석 2005-13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 11)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m," Released by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11, 2005.
- 12) 한국국적의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북한인권법 제302조 해석)을 둘러싸고 미국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13일.
- 13) John Feffer, "To Link or Not to Link: The Human Rights Question in North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Seoul 3 November 2005.
- 14)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2003), 36-48쪽.
- 15)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자료』 (서울, 2005).
- 16) 최의철,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5), 91-95쪽; Glyn Ford, "EU's Policy on Human Rights in DPRK,"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Seoul 3 November 2005.
- 17) 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담당자는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6년 2월 15일 서울에서 필자와의 면담 내용.
- 18)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5*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5) pp. 151-153.
- 19)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AS 24/003/2004, 17 January 2004.
- 20)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5* (New York: Human Rights Watch Publications, 2004), pp. 309-314.
- 2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인권감시협회 홍보국장 Tom Malinowski의 발언 (서울, 2004. 12. 1);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Ending Food Aid Would Deepen Hunger," London, October 11, 2006, <http://www.hrw.org/english/docs/2006/10/10/nkorea14381.htm>(검색일: 2006. 10. 13)
- 22) 2005-6년 사이 두 단체 본부 인사들이 북한인권관련 자료수집 및 한국사회의 동향 파악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Human Rights Watch는 2006년 5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보고서 "A Matter of Survival: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Food and the Risk of Hunger"를 발표한 바 있다.
- 23) 서한 전문은 인권감시협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hrw.org/english/docs/2006/09/16/nkorea14198.htm> (검색일: 2006. 9. 25) 이 서한에 서명한 단체는 인권감시협회 외에 미국북한인권위원회, Refugees International(미국), Anti-Slavery International(영국), 북한인권시민연합(한국)이다.
- 24) 대북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 자료집(2005. 5. 28-31 북경) 참조. 이외 2006년도 상반기 북한인권관련 국내의 동향은 임순화·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 25) 물론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가령 서독은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치를 계기로 1961년 11월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동독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반면, 한국은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6) 2005년 11월 방한한 문타폰(V.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 성명(프레지던트호텔 2005. 11. 10)을 통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대북 식량지원,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 27) Muntarbhorn,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60/306, 29/08/2005, p. 6.